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4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김원이·고영인·양원영

강선우・홍익표・허 영

주철현 · 조오섭 · 최혜영

박성준 • 한정애 • 신정훈

박홍근 · 김성주 · 김경만

위성곤 • 강훈식 • 김철민

맹성규 • 한준호 • 양정숙

의원(21인)

제안이유

코로나19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 단계에서부터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요하나 현재 이송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미비하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지자체장은 위치 정보요청만 가능하고 기타 교통, 금융정보 요청 권한이 없어 신속한 역학조사가 곤란해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 하기 어려움.

이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법령상 미비점을 보안하고, 불

명확한 규정 정비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의 치료 및 치료를 한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제2항제18호 신설).
- 나. 감염병의심자는 환자를 이송하는 119대원(응급구조자)에게도 특정 지역 방문 등의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하지 않도록 함(안 제35조의2).
-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심자에게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및 이동수단 제한과 감염 여부 검사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신설).
-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산·폐쇄 명령, 출입조사, 출입자 명단 작성, 방역상태 및 감염병의심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5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 간의 이동 전부 또는 일부 차단할 수 있고 영업행위 등 여러 사람의 집합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의2 신설).
- 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등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응원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49조제3항 신설).
- 사.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 본부장 외에 시·도지사도 확대 추가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 아. 정보제공 요청 거부 등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9조의 2제3호).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한 의료진에 대한 보호 제35조의2 중 "의료인"을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격리"를 "격리 및 이동수단 제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염 여부 검사

제49조제1항에 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지역 간의 이동 전부 또는 일부 차단
- 2의2. 영업행위 등 여러 사람의 집합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 하거나 금지하는 것
- 15. 해산·폐쇄 명령, 출입조사, 출입자 명단 작성, 방역상태 및 감 역병의심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
-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등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수 있으며, 행정응원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 본부장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으 로 한다.

제7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 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	②
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1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한 의료진에 대한 보호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
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	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	
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u>의료인</u> 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	
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	
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②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	
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	
을 할 수 있다.	<u>.</u>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u>격</u>	1 <u>격</u>
<u>리</u>	리 및 이동수단 제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감염 여부 검사</u>
③ ~ ① (생 략)	③ ~ ① (현행과 같음)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	
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지역 간의 이동 전부 또

<u> <신 설></u>

2. (생략) <신 설>

3. ~ 14. (생 략) <신 설>

② (생략) <신 설>

보 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 는 일부 차단

2. (현행과 같음)

2의2. 영업행위 등 여러 사람의 집합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 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 14. (현행과 같음)

15. 해산 • 폐쇄 명령, 출입조사, 출입자 명단 작성, 방역상태 및 감염병의심자 존재 여부 를 확인하는 것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 부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 2항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법」 제2 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 서의 장 등 다른 행정청에 행 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응원을 받은 행정 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 보 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

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 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_ 제18 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 • 단체 •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1. ~ 4. (생 략)
- ② ~ ⑨ (생 략)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저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 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 을 거부한 자

<u>도지사는</u>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79조의2(벌칙)
1.•2. (현행과 같음)

3.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 3.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 병관리본부장, 시 · 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
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u>자</u>